

[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

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 「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,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·훈련·연수·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도내 우수하고 참신한 기술 및 아이템을 갖춘 창업 초기(예비) 여성기업으로 제주센터에서 함께 성장해나갈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2. 8. 12.

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장

1. 모집개요

- 소재지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15길 23(일도동)
- 선정규모: 4개사
- 입주자격
 -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
 - ※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미등록 시 입주 계약 취소)
 - 신청자격제한
 -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
 - 국세,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
 - 입주 제외 대상 업종(참고자료 참조)
 - ※ 내부사정에 의거 인가·허가·등록 업종일 경우 입주가 불가할 수 있음

※ 여성기업

여성이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, 여성이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함,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(출자지분을 포함하되, 「상법」 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)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한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이어야 함

○ 지원내용

- 독립 사무공간(창업보육실) 및 기본 인프라(인터넷전용선 등) 제공
- 공용시설 사용지원(화상회의실 및 전자철판)
- 중소기업 지원시책, 여성기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지원
- 창업, 자금/회계, 인사노무 등 전문가 컨설팅
- 시제품개발 등 사업화자금 지원 등

2. 입주공간 및 입주자부담금

- 입주공간: 35~45㎡(10~12평, 전용면적) 내외
- 입주기간: 입주일로부터 1년(연장평가 후 2년 연장 가능)
- 부담금

구분	보증금	월관리비(VAT 별도)	비고
금액	1,500천원	10,000원/3.3㎡	부가세 10%

3. 선정기준 및 절차

- 선정기준: 창업자 역량, 기술성, 상품성 등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
- 선정절차
 - 1차: 서류심사
 - ※ 서류전형 통과 여부는 개별 통지

- 2차: 발표심사
 - 서류전형 합격 기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
 - 프리젠테이션(5분 내외) 및 질의 및 응답
- 결과발표: 개별통보(9월 中)
 - ※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입주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4.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

- 접수기간: 공고일 ~ 2022.08.31.(수)
 - ※ 모집기간 내 접수 미달 시 수시로 추가 모집 진행
- 접수방법: 이메일 및 방문접수
- 접 수 처
 - 이메일: chalna83@wbiz.or.kr
 - 방문: 제주도 관덕로15길 23(일도동) 2층
- 제출서류
 - 공통제출서류
 - 개인[신용]정보 수집/이용/제공 동의서 1부
 -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
 - 신용평가기관의 대표자 신용평가서(신용등급 필요) 1부
 -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전부사항 말소포함(해당자에 한함) 1부
 - 대표자 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(최근 2개년)
 - 대표자 이력서 1부(사진 포함)
 - 기타 회사소개자료 등(벤처기업확인서, 지적소유권, 매출증비서류 등)
 - 추가 제출서류(창업 1년 이상 기업체 해당)
 -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각 1부(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확인자료)
- ※ 제출 서류가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이 완료됨(누락 시 부적격 처리)
- 기타문의: 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
 - 전 화: 064-726-4467

[참고 1]

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

업종분류	산업표준분류	업종	비고
금융 및 보험업	K64~66	금융관련 업종	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
부동산업	L68~69	부동산 임대, 중개, 장비 및 기계 임대, 음반 및 비디오 등 임대업 등	
숙박 및 음식점업	J55~56	숙박업, 음식점업, 주점업	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
무도장 운영업	91291	무도장, 콜라텍, 댄스홀	
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9112	골프장 운영업, 스키장 운영업	
기타 갬블링 및 베틱업	9124	기타 갬블링 및 베틱업	
기타 개인서비스업	96	이용 및 미용업, 욕탕, 마사지 및 미용관련 서비스업 세탁 및 장례, 예식관련 서비스업 및 미분류 개인 서비스업 등	산업용 세탁업 제외
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		

※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< 산업표준 분류 >	
■ 55	숙박업(호텔업, 여관업, 휴양콘도 운영업,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)
■ 56	음식점 및 주점업(일반 음식점업, 기관구내식당업,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, 기타 음식점업, 주점업, 비알콜 음료점업)
■ 64	금융업(은행 및 저축기관, 투자기관, 기타 금융업)
■ 65	보험 및 연금업(보험업, 재 보험업, 연금 및 공제업)
■ 66	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(금융지원 서비스업,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)
■ 68	부동산업(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,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)
■ 69	임대업;부동산 제외(운송장비 임대업,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,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, 무형재산권 임대업)
■ 96	기타 개인 서비스업(미용,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,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)

[참고 2]

창업여부 기준표

신청기업 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3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동종유지	창업아님	
		이종	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부도/파산 - 2년 초과			창 업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 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3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동종유지	창업아님	
		동종의 신규 법인설립	창 업	
		이종	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부도/파산 - 2년 까지	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		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
	자회사 여부	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이면서 최대주주		창업아님
조직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	
	이종		창 업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	창 업	

[참고 3]

제출 서류 목록표

구분	서류명	발급처	개수
입주신청서	신청서 및 사업계획서	소정양식	1부
	개인(신용)정보 수집/제공/조회 동의서	소정양식	1부
	대표자 이력서(사진포함)	자유양식	1부
사업자 확인	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※ 단,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	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	1부
	법인등기전부사항 말소포함	법원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	1부
상시근로자 확인	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건강보험공단 (www.nhis.or.kr) 또는 4대사회보험 토털 (www.4insure.or.kr)	택1
	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-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	
매출액 확인	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必)	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또는 회계사/세무사 확인날인 자료만 인정	택1
	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		
신용도 확인	신용보고서(신용점수 必)	신용정보조회 이용 (나이스, 올크레딧 등)	1부
	국세 납부증명 - 법인사업자 : 회사, 대표자 - 개인사업자 및 예비창업자 : 대표자	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	1부
	지방세 납부증명 - 법인사업자 : 회사, 대표자 - 개인사업자 및 예비창업자 : 대표자	관할 구청,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(www.gov24.kr)	1부
기타증빙	지식재산권 보유 증명	각 발급기관	각 1부

